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경쟁력강화 계획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90일

신청인 (A)	회사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기업 구분 [ ] 대기업 [ ] 중견기업 [ ] 중소기업 [ ] 수요기업 [ ] 공급기업 [ ] 그 밖의 기업( )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	책임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신청인 (B)	회사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주소	기업 구분 [ ] 대기업 [ ] 중견기업 [ ] 중소기업 [ ] 수요기업 [ ] 공급기업 [ ] 그 밖의 기업( )	
	대표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	책임자	전화번호	전자우편

	품목명	품목별 목표	향후 계획
경쟁력강화 주요 내용	1.		
	2.		
	3.		
	필요한 지원사항 [ ] 공동기술개발 [ ] 공동기반구축 [ ] 공동투자 [ ] 적합성평가 [ ] 금융지원 [ ] 규제개선 [ ] 그 밖의 사항		

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·제15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·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과 관련 지원을 신청하고자 위와 같이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A)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 신청인(B)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적은 서류 2.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선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